

코로나19 피해업종 공공요금 지원 공고

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(시간)제한 업종의 경영 안정을 위한 『공공요금 지원』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31일

대전광역시장

1. 사업 목적

-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(시간)제한 업종 위기 극복 지원

2. 지원내용

□ 지원대상 및 금액

① (지원대상)

- ' 21. 7. 27이후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(시간)제한 행정명령 이행 사업체

구 분	해 당 업 종	지원금
집합금지	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무도장, 홀덤펍(홀덤펍게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	50만원
영업제한	식당·카페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학원(교습소)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이·미용업, 놀이공원(유원시설), 오락실·멀티방·DVD방, PC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이상)	

- (소 재)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한 사업체
- (개 업 일)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'21. 8. 31. 이전
- (영 업 중)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- (공동대표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- (1인, 다수 사업체)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 지급

② (제외대상)

- 집합금지 ·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(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)
- 비영리기업 · 단체 ·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

③ (지원금액) 공공요금 업체당 50만원(정액제) / 현금 지급

3. 지원방법 및 절차

□ 1차 신속지급

- (지원시기) 2021. 8. 31.(화)
- 심각한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 중 지급 정보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지급(휴·폐업 조회 후 지급)

□ 2차 신속지급(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)

- (신청기간) 2021. 9. 1.(수) ~ 9. 30.(목)
- (신청대상) 1차 신속지급 누락 사업체
- (온라인 신청)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 (sa.djbea.or.kr)
 - 접수시간 : 24시간 접수, 접수마감일 24:00까지 접수
- (방문신청)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(1층)
 - 신속지급 누락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대상
 - 접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, (점심시간) 12:00 ~ 13:00
 - 위 치 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104호

○ (신청서류)

- 기본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통장사본(또는 법인통장)
- 업종별 추가 서류
 - (주점 · 음식관련) 영업신고증
 - (학원 · 교습소) 학원(교습소)설립 · 운영등록증
 - (독 서 실) 독서실 설립 · 운영등록증
 - (이 · 미 용) 영업신고증
 - (공 연 장) 공연장 등록증
 - 놀이공원(유원시설) 영업신고 등록증

□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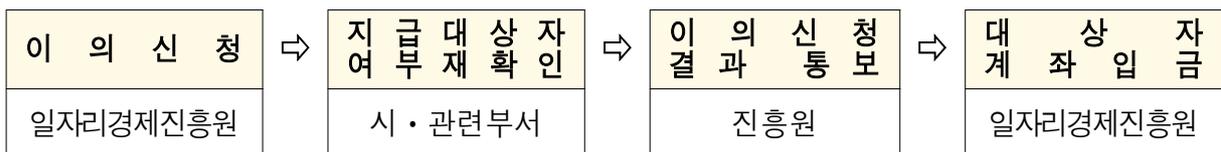


※ 신청 · 접수 후, 10일 이내 지급 예정

4. 이의신청

□ 이의신청 절차

- (일정) / 21. 9. 1.(수) ~ 10. 15.(금) / 접수 마감 2주 후 종료
- (대상) 지원제외 등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대상자
- (방법)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
- (제출서류)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
- (절차)



5. 유의사항
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중복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

6. 문의
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(☎ 380-7920~4)
 -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8:00, (점심시간) 12:00~13:00

